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 변경사항

새롭게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이 새로운 수입조건을 만족 시켜야 함

변경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에 적용됨

변경내용 및 수입조건을 확인하여 비용과 손실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

유럽연합결정 [Commission Decision 2007/275](#) (이하 결정'Decision')는 국경검사소(Border Inspection Post)에서 수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결정(Decision) Annex II 에 나와있는 식품 목록을 제외한 모든 육류 및 육류제품은 수의학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임.

최근 Annex II 는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으로 대체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에 적용될 예정임.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는가?

전체 변경 내용: <http://ahvla.defra.gov.uk/documents/bip/ovs-notes/2016-20.pdf>

다음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품들임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육류 분말 및 이를 함유하는 제품 (예: 면류 및 육수류)

-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육류 분말은 육류 제품에 포함될 것임.
- 이는 특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혹은 육류 분말을 함유하고 있는 인스턴트 면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면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형태(복합식품)과 별도의 포장을 동봉하고 있는 형태(복합식품 혹은 육류 제품) 모두 해당 됨
- 해당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육류제품 혹은 복합식품 증명서 및 수입조건을 만족 시켜야 함

- **필요조치:**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 육류제품 및 복합식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현재 수입되는 면류, 육수 및 육류 분말 중 육류제품 및 복합식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음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 충전이 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젤라틴에 동물성일 경우)은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임.
-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젤라틴 수입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승인된 제 3 국가의 승인된 젤라틴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함
 - 요구된 표기사항에 맞게 표기를 해야 함
 - 수입 시 젤라틴에 대한 보건 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동봉되어야 함
 - 기타 수입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경고사항:** 현재 중국에는 승인된 젤라틴 업체가 없으므로, 중국은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사람이 섭취할 목적의 동물성 성분 젤라틴 캡슐 수입이 불가능할 것임
- **필요조치:** 아래 유럽연합 홈페이지에서 승인된 업체 목록 확인

http://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충전된 젤라틴 캡슐

- 충전된 젤라틴은 동물성 가공제품(예. 어류 기름 캡슐은 어류 제품으로 분류) 혹은 함유성분에 따라 복합식품으로 평가함
- 수입하고자 하는 충전된 젤라틴 캡슐의 젤라틴이 EU 승인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경우, 동식물 건강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연락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필요조치:** 아래 동식물 건강국 국제무역센터 (APHA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에 연락처 정보 확인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1835/contacts-international-trade.pdf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유기 화합물은 처음으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될 것임. 특히 크레아틴(creatine), 시스테인(cysteine), 시스틴(cystine)이 언급됨
- **필요조치:**
 - 본 결정'Decision' 제 29 장에 명시된 요구조건 세부사항 확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D1196&from=EN#page=12>
 - 기타 규제품목에 대한 수입조건 확인은 동식물 건강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문의

적은 양(총 20% 미만)의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반면 제품에 함유된 동물성 성분은 EU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및 유사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매용 식품 보충제

-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성분(캡슐의 동물성 성분 포함) 총량이 20% 이상일 경우, 수의학적 검사 대상임. 해당제품은 유럽연합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759 에 명시되어 있는 고(高)정제 제품 보건 증명서(the health certificate for highly-refined products)를 동봉해야 함
- **필요조치:** 고정제 제품 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 참조
<http://www.porthealth.eu/import-process-highly-refined-products>

알코올성 음료

- 달걀, 크림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 음료는 복합식품일 가능성이 높음. 복합식품의 수입 요구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함
-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아닌 품목이 함량하고 있는 달걀 및 유제품도 달걀 및 유제품 성분에 대한 잔류량 지침 승인을 받은 국가의 생산품이어야 함

Annex II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품목 목록 변경사항

아래는 기존과 개정된 Annex II 의 비교표임. 개정본의 CN 코드별 제품 구분과 수의학 검사 면제 대상 범위 확인 필요

** 즉. 완전히 조리되었거나 혹은 성분 전체가 열처리 되어 모든 원재료가 변성된 제품.
Decision 2007/275/EC 의 Article 6(1)(a)(i) 참조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 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 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빵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 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초콜릿 과자류 (사탕류 포함)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 되거나 육류 가공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